

대한산악연맹

대회 전문인력(계약직) 채용 공고

대한산악연맹(Korea Alpine Federation)에서는 등산 및 산악스포츠의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2025 IFSC 서울 스포츠클라이밍 세계선수권 개최 관련하여 연맹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산악 문화의 진흥 및 산악스포츠의 대중화와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열정적인 분들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1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대리급 이상	대회운영 및 국제협력 (경력)	1명	- 대회 운영 전반 및 메뉴 관리 등 - 세계선수권 대회 개최 기획 및 준비 - 국제연맹 교류 및 국제대회 운영 - 기타 사무처 업무 행정지원

2 근무형태 및 조건

채용분야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지	근로계약기간	보수
대회운영 및 국제협력	계약직	상시근무자, 주 5일(월~금), 1일 8시간 (09:00~18:00) ※ 국내외 행사, 대회 시 주말 및 휴일근무 필수	올림픽 핸드볼경기장 10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24)	임용일 ~ 2025.12.31.	. 연봉 - 대리급 4천만원 . 복리후생 : 4대보험가입, 중식 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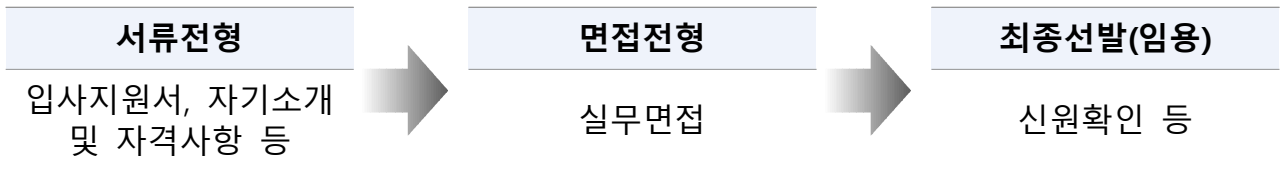
- * 최종합격자는 수습기간(3개월)을 거쳐 최종 임용 예정.
- * 보수는 경력과 전문성에 따라 세부 협의.
- * 수습기간 3개월간 보수는 100% 지급.
- * 계약만료 후 근무 평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 할 수 있음.

3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사무처 규정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60세) 이상자는 제외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단, 채용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가능 ○ 채용 즉시 근무지에 근무가 가능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구분		주요내용	
		○ 야간 및 휴일근무, 국내외 출장근무 가능한 자	
	응시자격	국제협력 및 대회운영 분야	○ 영어능통자 - 토익기준 775점 이상자(동등 성적 인정) (TOEIC 775점 / OPIC & TOEIC Speaking IH 등급 이상 / TOEFL(iBT) 88점 / TEPS 615점(뉴텡스 297점) / IELTS 7) ※ 선발공고 시점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에 한함.
	우대사항	○ 영어능통자 ○ 유관기관 및 체육관련 단체 근무경력자(2년 이상) ○ 체육(스포츠)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국제 / 미디어 / 대회운영 관련 업무 경력자 ○ 국제대회 운영 유경험자(체육행정 분야), 홍보·마케팅 유경험자 (홍보· 마케팅 분야) ○ PC활용능력 우수자 ○ 체육전공자 ○ 고등학교·대학 산악부, 등산학교 출신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운전가능자)	

4 전형절차



가. 채용일정 * 일정은 사무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추진일정
서류전형 (원서접수)	2025. 5. 16.(금) ~ 2025. 5. 26.(월) 24:00 [합격자발표: 2025. 5. 28.(수)]
면접전형	2025. 5. 29.(목) ※ 신분증 지참
최종합격자 발표	2025. 5. 30.(금)

나. 전형별 주요내용 (공개경쟁 채용)

구분	주요내용		합격배수
① 공통(유의사항)			
• <u>입사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내용으로만 작성</u> • <u>서류전형 지원시 지원서에 작성한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u> 하여야 하며 <u>서류 누락 또는 미 제출 시 응시 제한될 수 있음.</u>			
② 전형별 평가방법			
서류전형	• (선발인원) 채용인원의 5배수 범위 내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 (평가기준) 자격요건, 경력, 자격증, 우대사항, 자기소개 등 평가		5배수
	구 분	주요내용	
	자격요건 확인	○ 필수 자격 충족여부 확인 -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시 탈락	
가점요소 평가	○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요소 평가 ○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요소만 인정 (증빙서류는 입사지원 시 제출)		
면접전형	• (일시/장소) 2025. 5. 29.(목) / 서울 송파구 대한산악연맹 *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지원동기, 전문성 및 직무이해도, 책임감, 성실성, 판단력, 영어(실무활용가능성, 유창성, 어휘, 문법 등) - 면접위원별 6개 항목 평가 (항목당 15점~20점 배점, 총점 100점 만점) ※ <u>영어 면접 병행 실시함.</u>		1배수
최종합격	• (선발기준) 합격평균 점수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함. • (최종확정) 지원 자격 검증 후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확정		-
예비합격 운영	• 차순위 1위를 예비 합격자로 하고, 최종합격자 중 중도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순위대로 임용 -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2배수

다. 전형단계별 가점대상

- 가점사항 중복 시 가산점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함.

유형	가점대상	전형단계		우대사항	적용기준	관련근거												
		서류	면접															
법정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대상자)	✓	✓	5점/10점	• 국가보훈처 발급점수에 따라 전형별 5점 또는 10점 부여 ¹⁾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		5점	• 국가장애인등록자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2항에 해당하는 자												
정부 권장 정책	청년 (만15~34세)	✓		3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해당하는 청년(2025. 2.17. 서류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경력	체육단체 유관기관 경력자	✓		1~5점	• 체육단체 유관기관 경력 <table border="1"><thead><tr><th>경력</th><th>1년</th><th>2년</th><th>3년</th><th>4년</th><th>5년 이상</th></tr></thead><tbody><tr><td>점수</td><td>1점</td><td>2점</td><td>3점</td><td>4점</td><td>5점</td></tr></tbody></table>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경력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경력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상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어학	공인어학성적(영어) 기준 점수 이상인 자	✓		3점	• 공인어학성적(영어) 기준 점수 <table border="1"><thead><tr><th>TOEIC</th><th>TOEFL-ibt</th><th>TEPS</th><th>OPIc</th><th>TOEIC Speaking</th><th>G-TELP (LEVEL 2)</th></tr></thead><tbody><tr><td>750 점</td><td>85점</td><td>285점</td><td>IM2</td><td>120점</td><td>70점</td></tr></tbody></table>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국내시험 성적만 인정함 *(증빙서류) 공인영어성적증명서	TOEIC	TOEFL-ibt	TEPS	OPIc	TOEIC Speaking	G-TELP (LEVEL 2)	750 점	85점	285점	IM2	120점	70점	
TOEIC	TOEFL-ibt	TEPS	OPIc	TOEIC Speaking	G-TELP (LEVEL 2)													
750 점	85점	285점	IM2	120점	70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관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 (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 적용). 다만, 동법 제31조 제3항 단서 관련 예외적으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라도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

5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제출시기	제출서류	제출방법	용도
① 공통(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 수신시간 이후 추가 접수 절대불가(송신시간 기준이 아니므로, 제출에 문제 없도록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 요망) -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사항은 증빙서류 모두 제출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② 제출서류 및 방법			
원서접수 [5. 16.(금) ~ 5. 26.(월)]	- 입사지원서(대한산악연맹 양식) ※ 메일 및 입사지원서 제목 - 채용분야_성명 - ex) 대회운영 및 국제협력_홍길동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경력 증빙서류 일체 - 우대사항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수상실적 등)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시·군·구청)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 - 병역필 혹은 병역면제 확인서류 * 남성지원자에 한함	- 담당자 이메일로 5.26(월) 24:00 까지 제출 - kockaf@kaf.or.kr	입사지원
면접당일 [5. 29.(목)]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국가발행 신분증만 인정		입사지원 확인용
합격자 발표 후	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 채용신체검사서 * 단, 신체검사 결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원본제출	

< 경력 관련 유의사항 >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책, 발급담당자 및 연락처가 표시되어야 하며, 본인의 지원 분야에 대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사 직인(또는 인감)이 포함된 업무경력확인서를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확인서만 제출 시 불인정)
- 수기로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는 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외 서류(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등)는 불인정
- 지원서에는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기간을 기재하여야 함.
- 재직 중인 경우, 근무기간은 공고마감일(2025. 5. 26.)을 기준으로 기재
- 입사지원서는 한글파일로 제출(서명 기재)하며,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로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채용서류 반환 (온라인 제출서류 제외)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구분	주요업무
응시자 반환 청구기간	○ 2025. 5. 30.(금)부터 2025. 6. 13.(금)까지
반환 방법	○ 반환청구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비용 대한산악연맹 부담)
채용서류 보관기간	○ 2025. 6. 13.(금)까지
채용서류 파기	○ 2025. 6. 16.(월)

7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채용 관련 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대한산악연맹 직원 임용자격이 제한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라며, 최종 입사지원서 제출 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력의 계산, 자격증, 교육사항 등은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채용전형 중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제외) 이에, 반환을 원하는 지원자는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ockaf@kaf.or.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전형일시 등 구체적인 일정은 대한산악연맹 홈페이지(www.kaf.or.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8 문의 및 연락처: 박정이 과장 (☎ 02-414-2750)

2025. 5. 16.(금)



(사)대한산악연맹
Korea Alpine Federation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 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